

강원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의원입법·정책 동향



의 회 사 무 처
 강원도의회 (수석전문위원실)

제270회 임시회(2018. 1. 10.~ 1.19.)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기획행정 위원회 (4건)	강원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신영재 의원 김동일 의원	원안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문화 위원회 (3건)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이정동 의원	수정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상훈 의원 김기철 의원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농림수산 위원회 (1건)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	농림수산 위원장	
경제건설 위원회 (3건)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윤미 의원	원안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교육 위원회 (1건)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0회 임시회(2018. 1. 10.~ 1.19.) 의안 처리 목록

강원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 대표발의: 신영재 의원(기획행정위원회·자유한국당·홍천)
- 공동발의: 김동일 의원(의정 자유한국당 철원)



신영재 의원

김동일 의원

다양한 형태의 나눔·감사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나눔과 감사의 마음으로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강원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눔·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교육과 캠페인, 홍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곤, 생존 경쟁,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나눔·감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운동 차원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있어 강원도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이정동 의원(사회문화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정동 의원은 “강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춘천3)
- 공동발의: 김기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선1)



안상훈 의원

김기철 의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강원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훈 의원은 “현행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지난 4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으로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시·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윤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간 편차 없는 교통약자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일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장기재직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보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심신 재충전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탈상 1일을 추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다.

이종주 의원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공무원의 경조사 관련 휴가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